

업무협약서

대한법무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와 주식회사 로켓(이하 “로켓”이라 한다)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법무 서비스의 발전과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이하 “본 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대한법무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와 주식회사 로켓(이하 “로켓”이라 한다)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법무 서비스의 발전과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(이하 “본 협약”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2조(협력 범위)

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- 법무 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연구
- 법무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솔루션 개발 및 지원
- “협회” 회원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서비스 및 혜택의 우선 제공
- 양 기관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공동 홍보 및 마케팅 활동
-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역할 및 책임)

- “협회”는 본 협약에 따른 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회원 대상 홍보 및 정책적 자문을 제공한다.
- “로켓”은 최신 IT 기술을 바탕으로 법무 업무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고, 그 과정에서 “협회” 및 소속 법무사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다.

제4조(비밀유지)

-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상, 기술상 또는 업무상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본 협약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의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2년간 유효하다.

업 무 협 약 서

제5조 (서비스 이용료)

“로챗”은 “협회” 회원에게 ‘렉시아’ 서비스를 월 32,000원(부가가치세 포함)의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.

제6조(법적 구속력)

본 협약은 제4조(비밀유지), 제5조(서비스 이용료), 제8조(협약의 해지) 및 제9조(분쟁 해결)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.

제7조(유효기간)

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,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종료 통보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.

제8조(협약의 해지)

양 기관은 상대방이 본 협약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, 서면 통보를 통해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, “협회”와 “로챗”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8월 12일